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46
----------	-----

2022. 2. 10.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7. 김세준 의원 대표발의(6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2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1. 9. 10.)
“ 심사보류 ”
- 제3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2. 2. 10.)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김세준 의원)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남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과 이용자의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 나. 예산조치 :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상원)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에 따라 김세준 의원 등 6명으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본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빠르게 보급됨에 따라 국민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공유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명¹⁾으로 전동킥보드 보유자수를 합치면 이동장치 이용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아래 표 참조-PM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하고 있어 이동장치의 사고예방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태로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년도별	2017년	2018년	2019년
사고건수	117건	225건	447건
부상자(사망자) 수	124(4)명	238(4)명	473(8)명

1)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 클릭 : 2020년 10월 기준

- 안 제2조(정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이동장치“라 함)”란 「도로교통법」 2)(이하 “법”이라 함)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정하였음
- 안 제3조(책무)제1항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2항에는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해 법3)에 따른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의 수립·시행)제1항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포함할 사항을 각 호별로 규정한 바, 각 호 별 상세 설명이 요구됨. 아울러 제2항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할 때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본조신설 2020. 12. 10.]
- 3)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 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 ② 법 제50조 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 안 제5조(사업추진 등)제1항에는 구청장이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사업을 구분하여 규정한 바, 호별 구체적(이동장치의 교통시설, 주차시설, 가이드라인 등) 설명이 요구되며 제2항에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법인 등의 현황 및 예상 소요예산 등의 설명도 요구됨
- 안 제6조(보험가입)제1항에는 구청장이 이동장치 이용 시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는 대상자, 가입 및 보상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신청 절차, 신청방법 등의 구체적 설명과 함께 예상 소요 예산(가입자수, 산출 보험료 등)의 설명도 요구됨.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⁴⁾에 따른 그간의 보험 가입실적, 지급현황 등과의 연계 설명도 요구됨
- 안 제7조(실태조사)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전계획 및 안전교육 등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안전교육)는 구청장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각 호별로 규정한 바 호별 설명이 요구됨
- 안 제9조(안전문화 조성 등)는 이동장치 이용의 인식개선과 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홍보, 캠페인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임
-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는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음
- 한편, 2021년 예산에는 ‘구민자전거, PM 보험가입’ 관련 예산이 편성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430원x550,000원=236,500,000원)된 바, 이와 관련된 구체적(가입현황, 가입내용, 그간의 운영 실적 등) 설명이 요구됨

- 이에, 본 제정안은 이동장치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도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다만, 조례 제정 후 이용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홍보대책 마련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가입 등의 소요예산 등의 논의는 필요해 보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2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1. 09. 10.)

- 질 의 : 안 제5조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강남구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현황은 어떠한지
- 답 변 : 현재 강남구에는 9개의 전동킥보드 업체가 있음
- 질 의 : 안 제4조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규정하였는데 이 부분은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 답 변 :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임
- 질 의 : 전체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 답 변 : 현재 강남구민 자전거 보험료는 1인당 430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보험료는 1인당 100원 정도임. 강남구민이 54만 명이라고 할 때 5천4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을 예상됨
- 질 의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보험료가 자전거 보험료보다 저렴하게 책정된 이유는
- 답 변 :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보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구민수가 적어 보험료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함

□ 제2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1. 09. 10.)

- 질의과정 중, 김광심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 보류됨

□ 제3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2. 02. 10.)

- 토론과정 중, 김광심 의원으로부터 일부 조문의 중복되는 부분을 통합하여 간결하게 규정하고,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의 수립·시행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대여 사업자에 대한 정의와 준수 사항을 신설하여 대여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됨

7. 토론 요지

- 토론과정 중, 일부 조문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446호

발의일자 : 2022. 2. 10.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일부 조문의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을 통합하여 보다 간결하게 규정하고,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의 수립·시행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소관 부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대여 사업자에 대한 정의와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대여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수정내용

- 가. “대여 사업자”에 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2호)
- 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의 각 호를 삭제하고, 안전계획의 수립·시행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 다. 사업추진의 각 호를 삭제하여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환경 활성화로 통합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명확히 함(안 제5조)
- 라.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조성 등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을 통합하고,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행사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마.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함
(안 제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안 제2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안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를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

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의”로, “법인·단체”를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8조의 제목 “(안전교육)”을 “(안전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행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 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u>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u></p> <p><u>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u></p>
<p>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u>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u>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u></p> <p><u>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u></p>	<p>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u>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위한 기반구축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삭 제>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

<삭 제>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① -----
-----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
-----.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

<삭 제>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삭 제>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삭 제>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삭 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② ----- 제1항의 -----
----- 법인 또는 단체 -----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안전교육) 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통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삭 제>

제8조(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행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

제9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구청

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한 이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인식개선과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

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세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6
----------	-----

발의연월일 : 2021. 8. 27.

발의자 : 김세준·이향숙·이재민·
허주연·복진경·이상애
(이상6인)

1. 제안이유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남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과 이용자의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 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남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구축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구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② 가입 대상자, 가입범위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통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한 이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인식개선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